

# kiri Weekly

2016.1.4 제366호

## 포커스

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검토에 관한 소고

## 글로벌 이슈

2016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과 미국의 보험 입법 동향  
중국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동향

## 금융시장 주요지표

**kiri** 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 
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(여의도동 35-4) 8층 보험연구원 (문의 : 변철성 수석담당역 / 02-3775-9115)



#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검토에 관한 소고

정원석 연구위원

## 요약

■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 추가납입시 300만 원까지 별도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음. 이에 반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. 그러나 최근의 공무원 및 사학연금 개혁으로 인해 저소득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연금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 이에 따라 연금개혁에 따른 특수직역연금액 감소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보전하여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. 상대적으로 특수직역연금 수령액이 낮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가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■ 2015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 추가납입을 통해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- 2014년까지 사적연금가입자는 연금계좌로 분류되는 DC형 퇴직연금계좌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(이하 연금저축)의 본인 기여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을 한도로 12%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아 왔음.
  - 예를 들면,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200만 원 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 200만 원을 불입할 경우 두 계좌 납입액의 합인 총 400만 원에 대해 12%의 세액공제를 받았음.
- 2015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 혹은 IRP계좌에 그리고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계좌의 본인기여금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되었음.
  - 단, 연금저축만의 세제혜택한도는 4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IRP에 본인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 700만 원 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.
  - 예를 들면,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200만 원 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 2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인의 IRP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세 계좌 납입금액의 합인 700만 원에 대해 12%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■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증가한 2015년 IRP 적립금 납부를 통해 적립되는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- 여타 납입방식의 추가적인 적립금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, 올해부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형 IRP계좌의 추가적립금의 규모는 전 분기 대비 최대 186% 성장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.
  - 퇴직연금가입자들은 추가적립을 위해 개인형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.
  - 15년 9월의 경우 개인형 IRP 추가적립금 납입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15년 12월에는 연말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추가적립금 납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〈표 1〉 제도 유형별 퇴직연금 추가적립금 증감현황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DC형 퇴직연금		기업형 IRP		개인형 IRP		금액 합계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
'14.12월	146	-	5.7	-	248	-	400
'15.3월	127	-13	2.3	-59.6	709	185.9	839
'15.6월	119	-6.3	4.3	87	1,091	53.9	1,215
'15.9월	119	-0.3	8.3	93	1,104	1.2	1,232

자료: 금융감독원, 각 분기별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 재구성.

■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은 IRP를 이용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.

- 자영업자의 경우 2017년부터 IRP 가입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IRP를 이용하여 노후자금을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.<sup>1)</sup>
  - 퇴직연금제도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의무화되어 모든 근로자는 IRP 가입이 허용됨.
  - 미국·일본 등의 경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물론 공무원연금의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개혁과 함께 공무원의 IRP 가입을 허용하였음.

■ 본고에서는 공무원, 사립학교교원 등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허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.

1) 공무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(2조1항)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(근로기준법 2조1항)가 아님.

- 이하 본고에서 지칭하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자를 지칭함.
-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를 통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금급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다고 보기 때문이나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일정부분 해소되었음.
  -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진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.
    - 과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낮은 기여율과 높은 연금지급률<sup>2)</sup>을 적용받기 때문에 IRP 가입 허용을 통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의 당위성은 낮았음.
    - 하지만,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한 일반국민(이하, 일반 가입자)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일정부분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.
-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가입자의 기여율은 증가하고 연금지급률이 감소하여 일반 가입자와 공무원 가입자 간 차이가 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일반가입자의 기여율은 17.3%(국민연금+퇴직연금)인데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기여율은 18% (개혁 후)로 증가함.<sup>3)</sup>
    -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는 일반가입자 4.5%, 공무원가입자 9%로 공무원의 본인부담금 수준이 더 높음.
  - 연금지급율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 $1%+\beta$  (수익률에 따른 값)이고,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.7% 수준으로 감소하여 사적연금을 이용한 추가적인 노후소득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.
    -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약 40%는 월 2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.<sup>4)</sup>
    -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수익비<sup>5)</sup> 측면에서의 “국민연금+퇴직연금” 대비 비교우위는 감소했으며, 직업안정성 및 장기가입으로 인한 상대적 장점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    -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2016년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근무시 예상되는 연금액은 현

2) 연금지급률이란 해당 연금에 1년 가입했을 때 증가하는 소득대체율을 의미함. 예를 들어 연금지급률이 1%인 국민연금에 1년 가입할 경우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1% 포인트 증가함.

3)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<sup>16년</sup>16% → <sup>17년</sup>16.5% → <sup>18년</sup>17% → <sup>19년</sup>17.5% → <sup>20년</sup>18%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됨.

4)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(2014. 10. 7).

5) 수익비 = (수령한연금의 현재가치/납입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)

재가치 기준으로 177만 원, 9급의 경우 134만 원 수준으로 감소<sup>6)</sup>하였고 이에 따라 공무원 역시 사적연금을 이용한 추가적인 노후소득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.

- 지급개시연령, 유족연금 등 여타 소득보장 기능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혁되었음.

〈표 2〉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 가입자 비교

대상자 연금	일반국민		공무원		비고
	국민연금	퇴직연금	개혁 전	개혁 후	
기여율	9%(4.5%)	8.3%(0%)	14%(7%)	18%(9%)	공무원연금개혁으로 기여율 차이가 거의 없어짐
연금지급률	1%	수익률에 따름	1.9%	1.7%	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다르나 지급률의 차이 역시 줄어들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
수급개시연령	65세	55세	60세	65세	수급개시연령 동일
유족연금	60%	없음	70%	60%	유족연금 지급률 동일
소득재분배기능	있음	없음	없음	없음	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 존재

주: 괄호안의 숫자는 본인부담비율임.

-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 측면에서의 비교우위가 일정부분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측면과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IRP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.

- 공무원의 IRP 가입 허용 대상은 예상연금 수령액이 적은 최근 공무원 임용자 및 하위직 공무원부터 점진적으로 IRP 가입 허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.
- 단,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가입 대상자가 아닌이라는 점 등은 IRP 가입 허용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.
- 또한,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. [kiri](#)

6) 인사혁신처(2015), “공무원연금 이렇게 바뀝니다”.